

학과평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과평가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학과평가의 취지) 학과평가는 각 학과의 지표에 대한 대내외간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통한 학과의 발전, 나아가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 (주관부서) 학과평가는 평가지원실에서 시행하며, 그 결과의 활용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제 2 장 학과평가위원회

제4조 (학과평가위원회) ① 학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학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4대 계열(사회, 신학, 예능, 어문) 대표를 포함하여 야 하며 계열구분은 별표1과 같다.

③ 간사는 평가지원실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학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2. 학과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학과평가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과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 3 장 운 영

제5조 (평가대상) 학과평가는 본교의 각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학과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학과

② 편제미완성 학과

③ 졸업생 미배출 학과

제6조 (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교수, 교육, 교육성과, 학과활동의 4개 영역으로 한다.

② 각 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2와 같다.

제7조 (평가주기 및 시기) 학과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매년 1학기 초에 전년도 1,2학기에 대해 평가한다.

제8조 (평가방법) 평가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3, 별표4의 기준 점수, 별표5의 기타세부 내용에 따르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9조 (순위)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과 순위를 정한다.

제10조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부여, 학생정원조정, 장학금 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폐기) 이 규정은 학과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과평가의 계열 구분

계열	어문	사회	예능	신학
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회복지, 유아교육, 보육, 관광경영	교회음악, 실용음악	신학, 기독교교육

<별표2>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배점	산식	기준일자	평가방식	비고
1.교수 (29)	1.1 전임교원1인당 교내연구비	5	1인당 교내연구비	전년도	외부상대평가	공시 12-가
	1.2 전임교원1인당 교외연구비	5	1인당 교외연구비	전년도	외부상대평가	공시 12-가
	1.3 전임교원1인당 논문실적(국내외)	5	전임교원 1인당 전문학술지 논문수 (국내+국제)	전년도	외부상대평가	공시 7-가, 나 *예술계열은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연주 (업적평가)
	1.4 전임교원1인당 저역서 실적	5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전년도	외부상대평가	
	1.5 업적평가 평균점수	9	소속전임교원 업적평가 점수의 평균(영역별 T값 산정)	당해 연도 업적평가	교내상대평가	*업적평가(부분)면제자는 제외 *연구영역 제외
2.교육 (48)	2.1 중도탈락률	11	제적생수÷재적학생 반영점수:140-T값	당해연도 4.1	외부상대평가	공시 4-사
	2.2 신입생충원율(정원내)	11	입학자수(정원내)÷모집인원(정원내)	당해 학년도	외부상대평가	공시 4-다
	2.3 입시지원율(정원내)	9	지원자수(정원내)÷모집인원(정원내)	당해 학년도	외부상대평가	공시 4-다
	2.4 강의평가 평균	2	소속 전임교원 전공과목 강의평가 평균점수	당해연도 1,2학기	교내절대평가	
	2.5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4	전임교원 강의학점÷총 개설강의 학점	당해 연도 1,2학기	외부상대평가	공시 12-나
	2.6 전공과목 성적관리	5	A학점학생수÷성적인정 학생총수	당해 연도 1,2학기	교내절대평가	공시 2-가 (A학점 비율)
	2.7 학생상담 지도 실적	3	소속 전임교원 상담건수의 합÷소속 전임교원 수	당해 연도	교내절대평가	업적평가 1-2-3
	2.8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3	재학생수(정원내외)÷소속 전임교원수	당해 연도 4.1	교내절대평가	공시 4-마(재학생수) 공시 12-가(전임교원수) *주야간 학생수 합산 *예술계열은 재학생 *1.25 적용
3.교육 성과 (13)	3.1 취업률	4	학과별 취업률	당해 연도 6.1.	외부상대평가	공시5-다 교내 취업은 분모, 분자에서 제외 *취업률 미공시학과는 배점만큼 총취득점수 비율로 부여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산식	기준일자	평가방식	비고
	3.2 취업자수 추이	6	당해연도 취업자수 -전년도 취업자수	당해 연도 6.1.	교내절대평가	
	3.3 학생만족도	3	학과별 평균점수로 T점 수 산출	전년도 11월	교내상대평가	학과에 대한 문항만 반영
	기본점수	10				
	계	100				

<별표3> 평가지표별 기준 점수(교내절대평가지표)

평가 항목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2.4강의평가평균(점)	85이상	82이상	79이상	76이상	76미만
2.6전공과목성적관리(%)	28미만	32미만	36미만	40미만	40이상
2.7학생상담지도실적(점)	120이상	117이상	114이상	111이상	111미만
2.8교수1인당지도학생수(명)	40이상	36이상	32이상	28이상	28미만

<별표4> 취업률 기준 점수

구분	100점	97점	94점	91점	88점
3.2취업자수 추이	+ 3명	+ 2명	+ 1명	0명 이하	

<별표5> 기타세부내용

<p>○ 평가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절대평가: 지표별 급간에 의한 점수 부여 -외부상대평가: 타대학 동일학과의 지표와 상대평가하여 T값 반영 -교내상대평가: 교내 타학과의 지표와 상대평가하여 T값 반영 -직접점수부여: 학과평가위원회 위원이 직접 점수 부여 <p>○ 상대평가 지표 산식</p> <p>※ T점수 산출식 : $z = \frac{X-m}{a}$ (X= 지표값, m= 평균, a= 표준편차), $T= 10z + 70$</p> <p>(정부재정지원제한평가의 T값 산출식 준용)</p>
--

※ 지표별 최저점수(20점) 적용

- 타대학 동일학과는 재학생5천명이하 사립대학 동일 학과군의 평균값과 학과에서 추천한 타대학 동일학과 2개를 포함하여 T값 계산
- 주야간이 함께 있는 학과는 주간만을 비교대상으로 함.(교원관련 지표는 제외)
- 예능계열의 연구지표(1.3 논문실적, 1.4 저역서실적)는 업적평가 중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연주 점수와 비예능계열의 전문학술지 점수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T점수 부여
- 표준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외부상대평가 지표는 나머지학과의 평균 T값 부여
- 신설학과의 취업률 추이
 - 졸업생이 발생하여 학과평가에 처음 진입한 학과의 취업률 추이는 0%p를 적용함.
- 업적평가의 교원 소속은 당해연도 4.1. 기준